



**제 5 조 (면책사항)**

- ① 본인이 지급승인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등 기업구매자금어음에 관하여 허위·위변조, 작성 오류, 제3자의 청구 등의 사고가 있는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본인은 기업구매자금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지급과 관련하여 은행에는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기업구매자금 지급제시 명세표에 대해 지급승인(거절)통지를 팩시밀리 전송방식으로 한 경우 은행이 팩시밀리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 또는 서명을 본인이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기업구매자금결제 거래에 관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은행은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인장이나 서명의 도용,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팩시밀리 통지에 따른 기업구매자금 결제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해당 팩시밀리 통지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 원본의 존재 및 증거능력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항변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약정의 해지 등)**

상당한 이유없이 기업구매대금 결제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등으로 계속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은 약정을 제한하거나 해지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

본 인 : (인)

본인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  
  

본 인 : (인)